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
----------	-----

2022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7. 정진술 의원 등 16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2. 10. 21.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 2022년 12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정책의 개발과 제안, 정책의 평가와 감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칙이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주체를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토론회 등의 신청과 지원대상에 ‘교섭단체’를 포함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토론회 등 개최 주체에 교섭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교섭단체의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과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는 토론회 등의 개최 주체를 교섭단체로까지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음.

2 토론회 등 개최 주체에 교섭단체 추가(안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통해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이하 “토론회 등”) 등의 의견 청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규칙은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과 신청과 승인 절차, 관리부서와 결과의 반영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제4조제1항은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자격을 위원회와 의원으로 한정해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¹⁾
- 안 제4조제1항은 토론회 등의 신청자격에 교섭단체를 포함해 교섭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의견 청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는 교섭단체의 기능(표-1)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과 소속 의원들의 의사

1) 2022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각종 토론회 등이 60회 개최되었으며 이 가운데 15회는 위원회가 45회는 의원이 신청해 개최하였음(별첨 참조)

수렴 및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실제 각 교섭단체가 각종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토론회 등의 신청자격을 교섭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음.

〈표-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교섭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주관지원 부서 지정(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 규칙은 토론회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예산정책담당관을 총괄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고, 토론회의 내용과 신청자에 따라 주관 지원부서를 전문위원실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토론회 등의 신청자격에 교섭단체를 추가할 경우 이를 지원할 지원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신설해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 토론회의 주관지원부서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정하고자 함(표-2).

<표-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 ① (생 략)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5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u> : 정책기획담당관

- 이는 정책기획담당관이 각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현황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다만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10조(표-3)를 개정해 정책기획담당관의 사무에 교섭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을 추가하는 조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표-3>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10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책지원관의 채용,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책지원관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자에 교섭단체를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표-4).

<표-4>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

현 행	향 후																																
<p>(별지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p> <p>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귀하</p> <p>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항 사 명</td> <td colspan="3"></td> </tr> <tr> <td>목 적</td> <td colspan="3"></td> </tr> <tr> <td>일시·장소</td> <td style="width: 20%;">참석인원</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기대효과</td> <td colspan="3"></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내 용</p> <p>붙임 : 토론회 등 계획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 또는 의원 ○○○ (인)</p>	항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p>(별지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p> <p>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귀하</p> <p>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항 사 명</td> <td colspan="3"></td> </tr> <tr> <td>목 적</td> <td colspan="3"></td> </tr> <tr> <td>일시·장소</td> <td style="width: 20%;">참석인원</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기대효과</td> <td colspan="3"></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내 용</p> <p>붙임 : 토론회 등 계획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 또는 의원 ○○○ 또는 교섭단체 ○○○ (인)</p>	항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항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항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4 종합 의견

-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자격에 교섭단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교섭단체의 기능과 시민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교섭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부서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토론회 등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반영하기 위해 향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과 규칙의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2명, 찬성 12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정진술, 강동길, 김성준,
박강산, 박승진, 박유진,
박철성,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용균, 정준호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정책의 개발과 제안, 정책의 평가와 감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칙이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주체를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토론회 등의 신청과 지원대상에 ‘교섭단체’를 포함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토론회 등 개최 주체에 교섭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나. 교섭단체의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를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교섭단체가”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기획담당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신청 및 승인) ① <u>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u>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관리) ① (생략)</p> <p>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③ (생략)</p>	<p>제4조(신청 및 승인) ① <u>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교섭단체가</u>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기획담당관</u></p> <p>③ (현행과 같음)</p>